

# [미국 대법관이야기]

## 인권을 위해, 사형제에 다리 걸다

### - 대법관 윌리엄 브레넌

최승재 / 변호사

#### 사형제도

미국에서 약물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은 여러 차례 영화에서 다루어졌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는 사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다. 사형수는 가죽 끈으로 손과 발을 고정한다. 오른팔 정맥에 정맥주사를 통하여 약물이 용이하게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무 튜브로 단단히 동여맨다. 그리고 팔에 꽂힌 정맥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된다. 약물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선 사형수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물로서 전신마취제, 예를 들어 티오펜탈 나트륨 등을 쓰고, 호흡을 정지시키기 위한 약물인 브롬화 판크로늄과 같은 근이완제, 마지막으로 심장박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염화칼륨 등이 차례로 사형수의 몸에 주입된다. 사형수에게 약물을 주입하기 위하여 3명이 동시에 대기하다가, 각자 약품을 주입하는 장치를 작동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직 한 사람의 주입기만이 실제 약물을 사형수의 혈액 내에 주입되게 된다. 교수형을 취하는 우리나라나 약물주입형을 취하는 미국이나 여러 명의 사형집행인이 동시에 집행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리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집행관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바라면, <집행자>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리 많은 사람이 관람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약물의 생산이 중단되어 문제가 되었다. 전기 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과 약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약회사가 자신들이 생산한 약물이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품과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 어찌보면 아이러니한 이러한 일이 실제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형집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3단계 약물 중에서 전신마취제인 '티오펜탈 소듐(Thiopental sodium)'이 부족하여 켈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2건의 사형집행을 연기했고,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주에 마취제가 없어 다른 주에서 마취제를 빌려 왔으나, 다른 주에서 구입한 마취제로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남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 26일 애리조나주가 영국에서 마취제를 수입하여 사형을 집행하였다. 영국의 마취제 생산 제약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회사에 대하여 살인을 수출하였다는 비난이 있었다.

2010년 현재 사형제는 미국 3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여전히 있다.

대법관 브레넨은 Glass v. Louisiana 판결에서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전기의자를 사용하여 사형을 처하게 되면 사형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 이상의 것이다. 결국 그것은 현대판 화형에 다름 아니다.(nothing less than the contemporary technological equivalent of burning people at the stake)"(Glass v. Louisiana, 471 U.S. 1080 (1985))

## Glass v. Louisiana 사건

사형제의 근간은 탈리오의 법칙이 아닐까 한다. "사람의 목숨을 뺏은 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처벌은 바로 살인자의 목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인범 Glass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주는 사형집행방법으로 전기의자에 의한 집행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에 있어서도 의회에 의해서 승인된 약물이 아니면, 사형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2010년 현재의 미국이지만, 이 사건이 문제가 된 1985년의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이라는 방법이 없었다. Glass와 변호인들은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이 연방수정헌법 제8조(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의 금지)와 제1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전기를 흘려서 그 전기로 사망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의 과도한 고통을 사형수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브레넨은 이 사건의 소수의견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음에도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제거하는 것(mere extinguishment of life) 이상이다. 사형이 집행되면, 진저리를 치고(cringe), 뛰어오르고(leap), 놀라운 힘으로 가죽 끈을 잡아당긴다. 그리고 손은 붉어지고, 그러다가 희어진다. 경추는 강철 밴드를 댄 것처럼 뻣뻣해진다. 사형수의 손가락, 발가락, 얼굴까지 심하게 일그러진다. 전류가 흐르면 사형수의 동공이 튀어나와 뺨에 걸쳐 늘어진다. 그 과정에서 사형수들은 배변을 하거나, 소변을 보고, 피를 토하고, 침을 흘린다." 그는 판결문에서 사형수의 신체적 변화를 열거하면서,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을 화형에 빗대어 그 잔혹성을 묘사하였다.

Glass는 1987년 6월 사형되었다. 그러나 브레넨의 절절한 묘사는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기의자 사형방식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번복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네브라스카주 대법원은 2008년 2월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네브라스카주의 사형방식에 대해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

미국에서 최초로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사형수는 1890년 8월 6일 "케플러"였다. 2,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기의자로 최초의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이 뉴욕주에서 집행되

었다{In re Kemmler, 136 U. S. 436 (1890)}.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발명가 에디슨은 연관되어 있다. 에디슨은 직류전기를 개발하였고, 이에 반해 한때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유럽 출신의 테슬러(Nikola Tesla)는 교류방식의 전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테슬러를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 얼치기의 발견이라고 주장하면서 테슬러를 무시했다. 결국 에디슨에 의해서 채택되지 못한 테슬러의 교류는 웨스팅하우스사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교류방식에 비하여 직류는 원거리 전송시 현저한 감손이 발생하였고, 현재 우리는 교류방식의 전기 배전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류냐, 교류냐는 상당기간 논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은 직류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류의 위험성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교류형을 대신하는 사형방법을 모색하던 교정당국에 에디슨은 전기의자를 발명하여 채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교류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여 교류방식의 전기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였다. 비록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어린이들의 전기(傳記)에 등장하는 발명가 에디슨의 발명치고는 쓸쓸한 발명 중의 하나다.

Glass v. Louisiana 판결 이후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은 대부분의 주에서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집행으로 대체되거나, 병행되었지만, 2008년까지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만이 허용되었다. 2007년 테네시주에서는 47년만에 처음으로 홀튼에 대한 사형집행이 전기의자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그는 1차 걸프전쟁 참전용사로 1997년 테네시주 주도(州都)인 내쉬빌로부터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쉘비빌에서 전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격분, 소송으로 자녀를 살해한 뒤 전처를 죽여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이처럼 브레넌 대법관의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은 미국에서 상당기간 존속되었다.

### **Baze v. Rees(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방식이 위헌인지)**

2007년 미국 대법원은 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방식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다.{Baze v. Rees, 553 U.S. 35 (2008)}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미국 남부 켄터키주의 사형수들로 베이즈(Ralph Baze)와 볼링(Thomas Bowling)이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사형집행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3가지 혼합 약물 주입방식(three drug mixture lethal injection)이 사형수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어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혼합약물사용의 반대자들은 첫 번째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사형수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 두 번째 약물로 인해 몸이 마비되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인들은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이 위헌인지는 고통의 정도(the severity of pain risked), 고통발생의 가능성(the likelihood of that pain), 대체수단의 가능성(the extent to which alternative means are feasible)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소송에 대한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허가함으로써 2008년 4월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미국 내에서의 모든 사형집행은 정지되었다.

2008년 4월 16일 연방대법원은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약물주입방식의 사형이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지, 마취는 충분히 이뤄지는지, 사용되는 약품이 최선의 약물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결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 킨즈버그 대법관과 수터 대법관이 반대하였다. 킨즈버그 대법관은 대부분의 경우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은 고통을 느낄 수 없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켄터키주의 사형집행 규정에는 다른 주와 달리 첫 번째 약물 주입 이후에 무의식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료진이 살펴보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주리주의 경우에는 Taylor v. Crawford, 487 F. 3d 1072, 1083 (CA8 2007) 이후 의료진이 판단하는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는 등 여러 주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켄터키주와 달리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켄터키주의 절차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브레넌과 인권을 위한 항해**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에 대한 브레넌의 비판은 소수의견이었지만, 여러 주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입법으로 반영되었다.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결을 바꾸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체적인 수단으로 제공된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집행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도 킨즈버그 대법관과 같은 위헌의견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브레넌의 인권을 위한 항해는 사형집행방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다음 연재에서는 다른 방면에서 대법관 브레넌의 인권확장을 위한 투쟁을 살펴본다. 독자들은 이번 여행에서 인간에 대한 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이 우리 세상에 제기하는 문제들은 현재의 우리 삶에도 삶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줄 것이라고 믿는다.